



새로운 생각 키우기
열린 마음 가꾸기
튼튼한 체력 기르기

대성 가정 통신

제 2021 - 61 호
전화 : 031-584-0621
FAX : 031-584-9226

스승의 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

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항상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우리 학교에서는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시행 이후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및 일체의 선물과 접대를 정중히 사양하고, 가슴으로 학생들의 따뜻한 사은의 정에 감사하고자 합니다.

학부모님께서도 이점 양해해주시고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,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>

☞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음식물, 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없음.

대상	내용	허용여부
• 학교장 및 담임교사 (기간제교사 포함)	학생대표가 공개적인 행사에서 달아주는 카네이션	○
	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카네이션	×
	현재 가르치는 학생이 주는 선물	×
	지난해 담임교사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학생이 주는 선물 (선물은 5만원 이하)	○

※ 다만,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.

“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견지도 않습니다.”

[불법찬조금 신고처]

-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
 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85
 - 공무원 부조리 신고 : 031) 249-0999(익명신고)
-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
-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: www.hakbumo.or.kr → 학교길라잡이 →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
(02-393-8900, hakbumo@hanmail.net)

2021. 5. 10.

대성초등학교장